

여수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019. 8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계획지구는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일원으로 여수시청(본청, 문수청사), 여수항 등에서 7.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하여 여수시청과 연결되는 간선도로(만성로), 국도17호선, 전라선이 지나고 있고 만흥~오천 도로 확·포장이 계획되고 있어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계획지구 주변 4km 이내에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제2캠퍼스), 한영대학이 분포하고, 10km 이내에 여수오천일반산단, 여수국가산단, 삼일자원비축단지 등이 운영중에 있어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가구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택보급률은 전라남도 평균 주택보급률(110.7%) 대비 낮은 수준(101.6%)으로 주거시설의 공급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본 계획은 여수시 주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여수시 만흥리 일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여수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2 계획의 개요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2항 관련 [별표2]의 2. 개발기본계획【가.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지정면적 : 474,149m²]에 해당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대상사업	○ 계획지구 면적 : 474,149m ²	

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8.01.16., 시행 2018.07.17.)에 의해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명칭변경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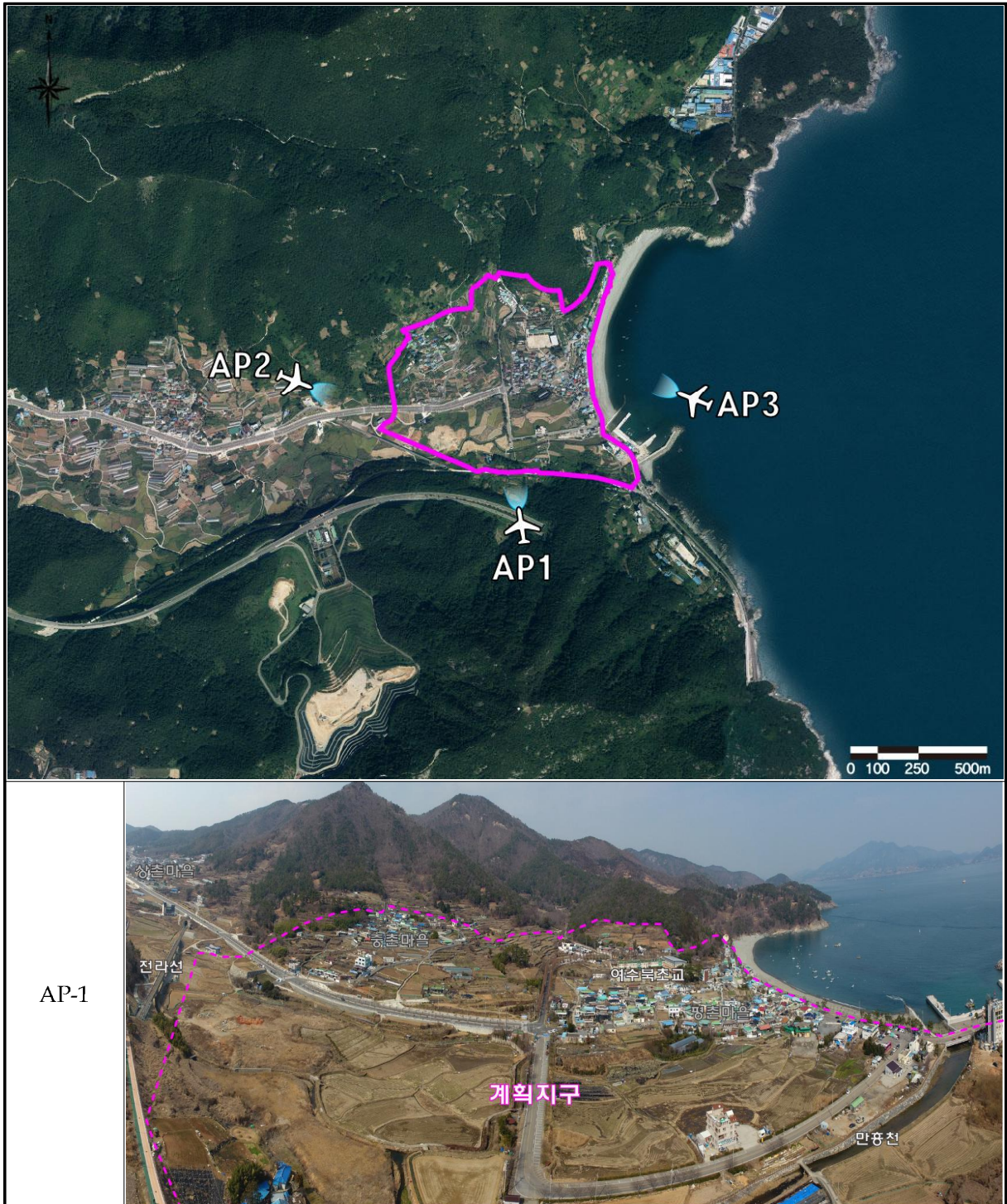
나.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여수만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계 획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만홍동 일원
- 계 획 내 용 : 474,149m²
 - 수용가능인구 : 8,297인(3,578호)
- 사 업 기 간 : 2019년 ~ 2024년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 협 의 기 관 : 환경부

다. 추진경위 및 계획

- 2019.04.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
- 2019.06.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 2019.07.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19.08.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
- 2019.0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예정)
- 2019.09.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예정)





(그림 1.2-2) 계획지구 전경사진



(그림 1.2-2 계속) 계획지구 전경사진

제 2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 11인(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일자 : 2019. 07. 01.~2019. 07. 08.
- 결정사항 : 대상지역의 설정,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2. 토지이용구상안 / 3. 대안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2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2.1 대상지역 설정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항목별 대상지역을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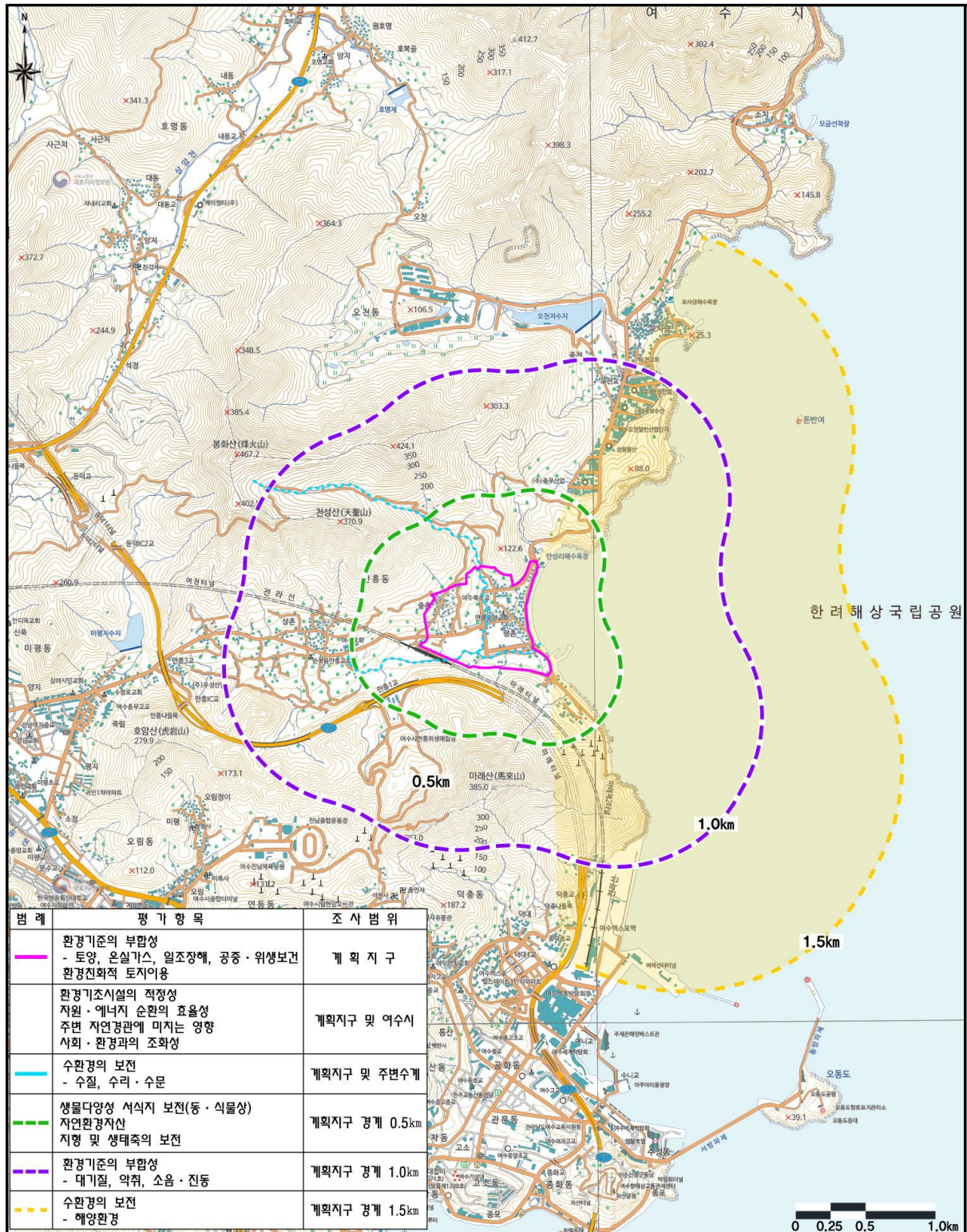
〈표 2.2.1-1〉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전략환경영향평가)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선정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계획지구	• 운영시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의 설정 및 검토	• 계획지구	• 운영시
입지의 타당성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동·식물상	• 동·식물상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계획지구와 간접적인 영 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범 위로 설정함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동물상 0.5k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자연환경 자산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자 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 되는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함	• 계획지구 경 계 로 부 터 0.5k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공사시 절·성토에 따른 지형형상 및 지질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평 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계획지구	• 공사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 의 지침」과 계획지구 주변 지형 등을 고려하여 계획지구가 조망 가 능한 주변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계획지구 경 계 로 부 터 1.0km 이내	•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수질 (수리· 수문)	• 사업시행에 따른 토사유출, 우수유 출량 변화, 비점오염원 발생에 의 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 대상범위로 설정함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 공사시 • 운영시
		해양환경	• 공사중 강우시 토사 유입과 운영시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 는 인근해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 정함	• 계획지구 경 계 로 부 터 1.5k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표 2.2.1-1 계속〉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전략환경영향평가)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선정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입지의 타당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 상	• 여수기상대의 지난 10년간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 예측 및 분석의 기초자료로 이용함	• 계획지구 인근 기상대	• 2008~2017년
		대기질	• 계획지구 공사 및 운영에 따라 대기질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정온시설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계획지구 경 계 로 부 터 약 1.0k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악취	• 계획지구 운영시 주변 악취유발시설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계획지구	• 운영시
		온실가스	• 공사시 투입장비, 이동차량 증가 및 운영시 연료사용 및 에너지 이용으로 인한 온실가스배출이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계획지구	• 공사시 • 운영시
		위생·공중보건	• 계획지구 운영시 주변 오염유발시설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계획지구	• 운영시
		토양	• 공사시 공사장비 운영,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유발요인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계획지구	• 공사시
입지의 타당성		소음·진동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 공사차량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운영시 주변 및 내부 교통시설 등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계획지구 내부를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계획지구 경 계 로 부 터 약 0.5k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일조장해	•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 입지로 인한 일조장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처리 등의 적정성 검토	• 계획지구 및 여수시	• 운영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수립의 필요한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계획지구 및 여수시	• 공사시 • 운영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수반되는 지역을 운영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계획지구	• 운영시
		인구·주거	• 계획시행으로 인해 인구 및 주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계획지구 및 여수시	• 공사시 • 운영시

여수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서



(그림 2.2.1-1) 대상지역 설정도(전략환경영향평가)

나. 환경영향평가

- 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범위를 예측·분석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함
- 대상지역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 01, 환경부」 등을 참고함
- 계획시행에 따른 자연생태환경분야, 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환경분야 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의 평가대상 지역을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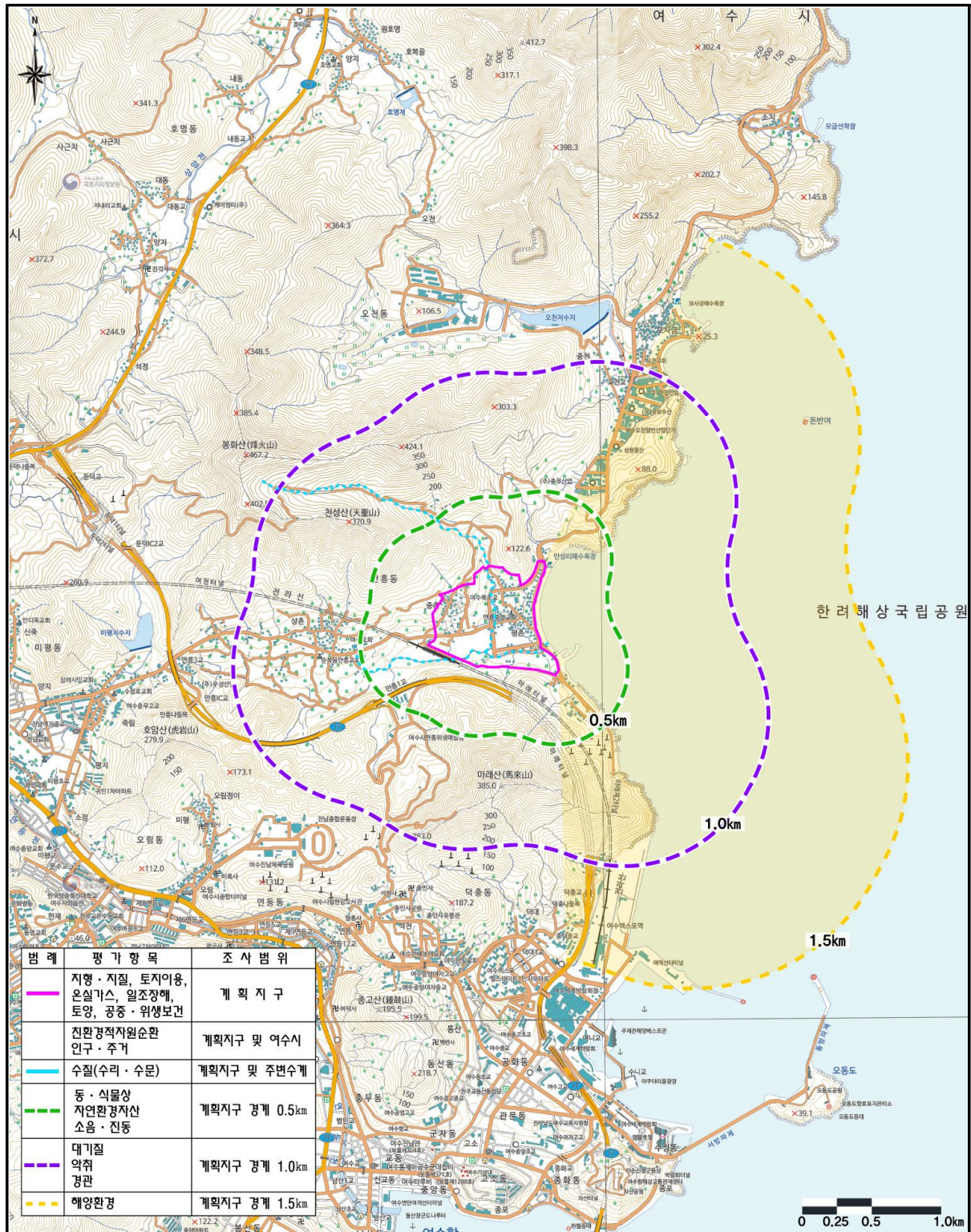
〈표 2.2.1-2〉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환경영향평가)

구 분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 상	•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계획지구와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0.5k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자연환경 자산	•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계획지구와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0.5k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대기 환경	기상	• 여수기상대의 지난 10년간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 예측 및 분석의 기초 자료로 이용함	• 주변 인근기상대	• 2008~ 2017년
	대기질	• 계획지구 공사 및 운영에 따라 대기질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정온시설을 고려하여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k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악취	• 계획지구 운영시 주변 악취유발시설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계획지구	• 운영시
	온실가스	•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연료사용, 이동차량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배출이 예상되므로 계획지구를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계획지구	• 공사시 • 운영시
수 환경	수질 (수리·수문)	• 공사중 강우시 토사 유입과 운영시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 공사시 • 운영시
	해양환경	• 공사중 강우시 토사 유입과 운영시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인근해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5k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표 2.2.1-2 계속〉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환경영향평가)

구 분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토지 환경	토지이용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수반되는 계획지구를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운영시
	토양	• 공사시 공사장비 발생 폐유 및 지장물 철거 등에 따른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계획지구를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계획지구	• 공사시
	지형·지질	• 공사시 절·성토에 따른 지형형상 및 지질 변화가 예상되는 계획지구를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계획지구	• 공사시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수립의 필요한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계획지구 및 여수시	• 공사시 • 운영시
	소음·진동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 공사차량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운영시 주변 및 내부 교통시설 등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계획지구 내부를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계획지구 및 경계로부터 0.5km	• 공사시 • 운영시
	일조장해	• 계획시행으로 운영시 주택단지 조성으로 계획지구 내·외부의 일조에 영향이 예상	• 계획지구	• 운영시
	위생·공중 보건	• 계획지구 운영시 주변 오염유발시설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계획지구	• 운영시
	경관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과 계획지구 주변 지형 등을 고려하여 계획지구가 조망 가능한 주변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km 이내	• 운영시
사회 경제 환경	인구 주거	• 사업시행으로 인해 인구 및 주거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계획지구 및 여수시	• 공사시 • 운영시

여수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서



(그림 2.2.1-2) 대상지역 설정도(환경영향평가)

2.2.2 대안의 설정

가. 대안의 종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 환경적 목표와 기준,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함
- 대안의 설정은 계획의 특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환경부, 2017.12」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별표4]에 제시한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을 참조하였음
- 본 계획은 여수만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정을 목적으로 하는 바, 계획을 수립할 경우 (Action)와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에 대한 “계획비교” 측면에서의 대안, 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요·공급” 측면에서의 대안,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입지” 측면에서의 대안을 설정하여 각 대안별 비교·평가를 제시하였음

〈표 2.2.2-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계획지구
계획비교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적용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적용
입지조정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적용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 (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나. 대안의 비교·검토

1) 계획비교(Acition, No action)

- 개발기본계획 수립(Action) 및 개발기본계획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영향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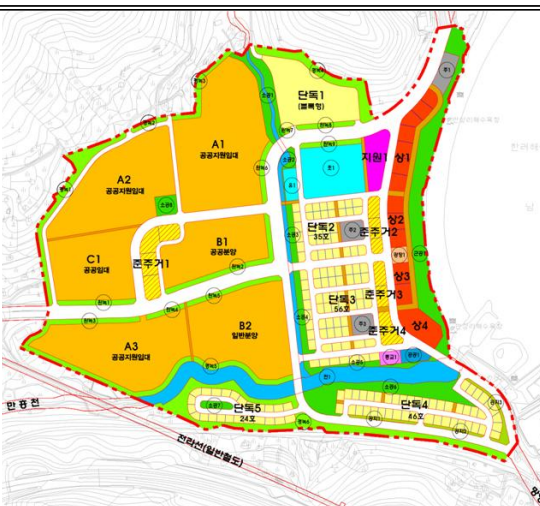
〈표 2.2.2-2〉 계획비교(Acition, No action)

구 분	계획 미수립시(No Action)	계획 수립시(Action)
토지이용 측면	• 토지이용계획상의 변화 없음 • 농경지, 임야, 주거지, 상가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 농경지, 임야의 감소가 예상됨 • 주거단지 조성으로 여수시 주택공급 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해안변 완충공간(공원) 확보등 친환경적토지이용 계획
수자원 이용측면	• 변화 없음	• 시설 운영에 따른 급수 및 오수 발생이 예상됨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한려해상국립공원 및 생태자연도(지형경관) 1등급지역인 만흥리 모래해변이 접하여 있고 비점오염원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
생태계 훼손 가능성	• 생태계 변화없음	• 토지이용의 변경에 따라 농경지, 임야의 훼손 및 변화가 예상됨 • 완충녹지, 공원, 소하천정비 등을 통하여 주변 생태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 지형의 변화가 없음	•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나 적절한 저감대책 수립으로 훼손 최소화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미치는 영향	• 생활환경의 변화가 없음	• 친환경적계획 수립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없음	• 부지조성, 공동주택조성 등에 따른 경관상의 변화가 예상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 공사 미시행으로 주변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미치는 영향없음	• 계획시행에 따른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의 환경영향이 예상되나, 각종 저감대책으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선 정 안		◎
	• 계획수립시 농경지, 임야의 감소, 지형 및 경관의 변화, 환경오염 물질의 증가 등이 예상되나 주거용지 확보로 여수시 지역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한 계획시행(Action)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됨.	

2) 수요·공급에 따른 비교·검토

-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별 검토를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구상(안)에 대한 2개의 대안을 비교·분석하였음

〈표 2.2.2-3〉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 비교·분석

구 분	대안 1	대안 2
토 지 이 용 구 상		
특징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과 만성리 검은모래해변 해양관광지육성을 아우르는 복합단지 조성 • 오천일반산업단지~여수시청 간선도로(만흥로)를 통한 단지 구분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거안정 도모에 중점을 두는 단지조성 • 오천일반산업단지~여수시청 간선도로(만흥로)의 단지내 통과를 통한 교통접근성 강화
장점	• 계획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부지규모를 적절히 배치 • 만성리 해양관광지 기능 수행 강화를 위한 해안주변 상업·준주거용지 배치로 관광단지기능 강화 • 공동주택지 내 준주거, 공원, 녹지 등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 만성리 해안변 단독주택지의 단지화 및 경관 양호지역은 블록형 계획을 통한 특화마을 조성 가능	• 계획목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확대 및 최대 가처분 용지 확보 가능 • 상업시설 및 간선도로와 교육시설 사이에 단독주택 부지를 배치하여 정온한 교육환경 조성 • 만성리 검은모래해변 간선도로(만흥로) 통과로 성수기 교통혼잡 문제 완화 가능 • 공동주택부지 주변 절골천 입지로 공동주택단지내 수변기능 확보 가능
단점	• 만성리 검은모래해변 관광성수기시 교통병목현상에 따른 교통정체 다소우려 • 교육시설과 접하여 간선도로, 상업시설을 배치하여 소음발생 등에 의한 영향우려	• 만성리 검은모래해변 관광지내 만흥로 간선도로 통과로 만성리 검은모래해변 보행접근 불편 및 상업지 연계 등 관광서비스 기능 약화 우려
선정안	◎	
선정 사유	• 대상지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관광기능은 강화하고 여수시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지 조성 가능 • 간선도로(만흥로) 구분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만성리 검은모래해변 관광지의 성격에 부합하는 기능 수행에 적합한 “대안1”이 바람직함	

3) 입지에 대한 비교·검토

- 본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지구 경계에 대한 2개의 대안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입지에 따른 대안별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2.2-4〉 지구계 입지에 대한 비교

	대안1	대안2
경계 설정도		
면적	474,149㎡	403,599㎡
특징	• 당초 지역사업인 “만항도시개발사업구역”을 바탕으로 남서측 도시지역 포함	• 당초 지역사업인 “만항도시개발사업구역”을 바탕으로 서측 도시지역 포함
장· 단점	• 만항천을 대상지에 포함하여 재해 등에 대비한 계획 수립가능 • 소하천주변 녹지조성으로 주거시설과 완충공간 확보 및 공원조성으로 해안과 완충공간 확보하여 소하천, 공원 녹지 생태축 확보 • 대상지 서측 산지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자연도 2등급지 제척 • 대상지 남측 철도보호지구와 근접하여 철도소음 등에 의한 주거환경에 영향 우려	• 대상지 서측 산지의 과도한 편입으로 산지훼손 및 생태자연도 2등급지 일부편입 • 남측 철도부지 60m이상 이격되어 철도소음 등에 의한 주거환경에 영향 상대적 양호
선정 (안)	◎	
선정 사유	•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환경·생태·지적 등 경계를 고려하여 지구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서측 임야 및 생태자연도 2등급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구계 정형화를 통해 토지이용 효율성 증가에 적합한 “대안1”이 바람직함	

2.2.3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평가항목의 선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 환경부」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8-205호), 2018. 12. 12, 환경부」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제시된 [별표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선정함

〈표 2.2.3-1〉 평가항목 선정(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			평가항목의 선정사유
				중 점	일 반	제 외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	• 상위 행정계획과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 • 관련 행정계획과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
	대안 설정 · 분석의 적정성			○	-	-	• 입지, 수요·공급 등에 대한 대안 검토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동 · 식물상)	동 · 식물상	○	-	-	• 계획시행 시 산림훼손, 지형변화, 부지조성·운영에 따른 동 · 식물상 서식지, 이동로 변화로 보호대상생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영향
			자연환경 자산	○	-	-	• 계획지구 주변 생태환경관련 보호지역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범위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 · 지질	○	-	-	• 계획시행 시 지형변화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등의 가치가 있는 지형훼손, 생태축의 훼손에 대한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	-	• 계획시행 시 지형변화에 따른 자연경관변화, 보전가치가 높은지역, 경관보전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
		수 환경의 보전	수질 (수리 · 수문)	○	-	-	• 계획시행으로 공사시 토사유출, 운영시 오수 및 비점오염원발생에 따른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 및 수계에 직·간접적인 영향 검토
			해양환경	○	-	-	• 계획시행으로 공사시 토사유출, 운영시 오수 및 비점오염원발생에 따른 주변 해상에 미치는 영향 검토

〈표 2.2.3-1 계속〉 평가항목 선정(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			평가항목의 선정사유
				중점	일반	제외	
입지의 타당성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합성	기상	-	○	-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	-	-	• 계획시행으로 공사시 토공발생, 공사장비·차량 운행,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발생에 따른 영향 검토
			악취	○	-	-	• 계획시행으로 운영시 주변 악취유발요소에 의한 영향 검토
			온실가스	○	-	-	• 계획시행으로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연료·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발생 검토
			위생·공중보건	○	-	-	• 계획시행으로 운영시 주변 오염유발요소에 의한 영향 검토
			토양	-	○	-	• 계획시행으로 공사시 폐유발생, 지장물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유발요인 검토
			소음·진동	○	-	-	• 계획시행으로 공사시 공사장비·차량 운행, 운영시 교통량증가에 따른 소음·진동발생 검토
			전파장해	-	-	○	• 계획 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일조장해	○	-	-	• 계획시행으로 운영시 주택단지 조성으로 계획지구 내·외 부의 일조에 의한 영향 검토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	-	• 계획시행으로 운영시 발생하는 하수·분뇨, 폐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규모, 연계처리 등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 계획시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따른 영향 검토 및 처리계획수립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	-	• 지속 가능한 주택단지 및 환경친화적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적정성 파악 및 편입토지 보상대책 수립
		인구		-	○	-	• 인구유입에 따른 영향검토
		주거		-	○	-	• 주거변화에 따른 영향검토
		산업		-	-	○	• 계획 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2) 평가범위 및 방법

-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선정 한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영향 예측의 범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2.2.3-2〉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일관성 및 연계성 검토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계획의 비교 및 입지 측면에서 설 정된 대안을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 분석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 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0.5km 이내 -육상·육수생태계 -2회조사	○계획수립 범위를 고려하여 동·식물 현황 및 서식환경을 파악, 생태계 영향과 범위 예측	
			○계획지구	○토지이용구상 및 입지현황을 고려 하여 지형변화 및 생태축 변화여부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km 이내	○계획내용을 토대로 경관변화 여부 및 경관변화 정도를 예측
		수 환경의 보전	수질 (수리·수 문)	○계획지구 및 주변수 계(만흥천, 절골천) -지표수 9지점 지하수 4지점 -2회조사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사유출 영향 검토 ○계획시행으로 인한 오수 발생 영향 검토 ○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여부 검토 ○점, 비점오염원 발생 검토
				해양환경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5km 이내 해양 -해양수질·저질 3지점 해양생태계 조간대 3지점 조하대 등 3지점 -2회조사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합 성	기 상
	대기질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km 이내 -대기질 4지점 -2회조사			○계획시행으로 교통량 증가, 연료사 용에 따른 영향예상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대기환경기준과 비교·평가
	악 취	○계획지구 -복합악취 2지점 -2회조사			○계획시행으로 주변 시설에서 유발 되는 악취에 의한 영향을 예측하여 주거시설 입지에 대한 영향을 평가

〈표 2.2.3-2 계속〉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입지의 타당성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합 성	온실가스	○계획지구	○계획수립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량 변화
			토 양	○계획지구 -토양 6지점 -2회조사	○계획시행으로 폐유발생, 지장물 철 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영향예측
			소음· 진동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0.5km 이내 -소음·진동 7지점 -2회조사	○소음·진동 예측식을 이용하여 계획 시행 시 소음·진동 영향을 예측하여 소음환경기준 등과 비교·평가
			위생· 공중보건	○계획지구 -현황조사 2지점 -2회조사	○계획시행으로 주변 시설에서 유발 되는 오염원에 의한 영향을 예측하 여 주거시설 입지에 대한 영향을 평가
			일조장해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 입지로 인한 일조장해 영향 검토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계획지구 및 여수시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연계처리 방안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계획지구 및 여수시	○운영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폐 기물 처리정책을 고려한 자원활용 과 에너지 순환성 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주변 환경 및 지형 등 여건을 고려 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여부 검토 ○계획 수립에 따른 인구 및 주거 변화

나. 환경영향평가

1) 평가항목의 선정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2018-205호), 2018. 12. 12, 환경부」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제시된 [별표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선정함

〈표 2.2.3-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중 평가항목(환경영향평가)

구 분	항목수	평가항목
자연생태환경분야	2개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대기환경분야	4개	○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 환 경분야	3개	○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분야	3개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생활환경분야	6개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사회·경제환경분야	3개	○ 인구, 주거, 산업
계	21개	-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표 2.2.3-4〉 중점평가, 현황조사 및 제외항목 선정(환경영향평가)

구 분	중점평가항목	현황조사항목	제외항목
합 계	15항목	4항목	2항목
자연생태환경분야	○ 동·식물상	○ 자연환경자산	-
대기환경분야	○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 기상	-
수환경분야	○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	-
토지환경분야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
생활환경분야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일조장해	-	○ 전파장해
사회·경제환경분야	-	○ 인구, 주거	○ 산업

〈표 2.2.3-5〉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			평가항목의 선정(제외)사유
		중점	일반	제외	
자연 생태 환경	동· 식 물 상	○	-	-	• 공사시 및 운영시 동·식물상 서식지, 이동로 변화, 보호대상 생물 등에 대한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저감대책 수립
	자 연 환 경 자 산	-	○	-	• 주변 생태환경관련 보호지역에 대한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저감 대책 수립
대기 환경	기 상	-	○	-	• 대기질 영향예측 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 기 질	○	-	-	• 공사시 토공발생, 공사장비·차량 운행,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발생에 따른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저감대책 수립
	악 취	○	-	-	• 악취발생 요인에 따른 사업지구 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저감 대책 수립
	온 실 가 스	○	-	-	•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연료·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을 예측·분석하여 저감대책 수립
수 환경	수 질 (수리·수문)	○	-	-	• 공사시 토사유출, 운영시 오수 및 비점오염원발생에 따른 수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저감대책 수립
	해 양 환 경	○	-	-	• 공사시 토사유출, 운영시 오수 및 비점오염원발생에 따른 주변 해양환경, 어업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저감대책 수립
토지 환경	토 지 이 용	○	-	-	• 대상지의 토지이용 현황, 규제여부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을 검토하여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편입토지 보상대책 수립
	토 양	-	○	-	• 공사시 공사장비투입, 지장물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유발요 인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저감대책 수립
	지 형 · 지 형	○	-	-	• 공사시 지형형상, 지질 등에 미치는 영향, 흙깎기·쌓기작업에 의 한 지형변화, 비탈면발생 등에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저감대책 수 립

〈표 2.2.3-5 계속〉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			평가항목의 선정(제외)사유
		중점	일반	제외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하는 성상별폐기물 발생에 따른 영향 예측, 저감대책 수립
	소음·진동	○	-	-	• 공사시 공사장비·차량 운행, 운영시 교통량증가에 따른 소음·진동발생 검토,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저감대책 수립
	위락·경관	○	-	-	• 대상지 내·외 지역의 위락·여가시설에 미치는 영향 예측, 분석하여 저감대책 수립 •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인문·조망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대상지역의 경관계획, 지침 등을 고려하여 저감대책 수립
	위생·공중보건	-	○	-	• 오염발생 요인에 따른 사업지구 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저감대책 수립
	전파장애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일조장애	○	-	-	• 운영시 대상지 내·외부의 일영상황을 검토하여 시설물로 인한 일조피해를 예측·분석하여 저감대책 수립
사회·경제·환경	인구	-	○	-	• 인구유입에 따른 영향검토
	주거	-	○	-	• 주거변화에 따른 영향검토
	산업	-	-	○	• 계획 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2) 평가범위 및 평가방법

- 본 사업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선정한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평가범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2.2.3-6〉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0.5km 이내 -육상·육수생태계 -2회조사	○ 현황조사 : 2회 ○ 계획수립 범위를 고려하여 동·식물 현황 및 서식환경을 파악, 생태계 영향과 범위 예측 및 평가
	자연환경 자산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0.5km 이내	○ 계획수립 범위를 고려하여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 영향 예측 및 평가
대기 환경	기상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지구 및 인근 지역 국지적 기상특성 분석(기상대 자료)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km 이내 -대기질 4지점 -2회조사	○ 계획시행으로 교통량 증가, 연료사용에 따른 영향 예상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대기환경기준과 비교·평가
	악취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km 이내 -복합악취 2지점 -2회조사	○ 계획시행으로 주변 시설에서 유발되는 악취에 의한 영향을 예측하여 주거시설 입지에 대한 영향을 평가
	온실가스	○ 계획지구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및 평가
수 환경	수질 (수리·수문)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만홍천, 절골천) -지표수 9지점 -지하수 4지점 -2회조사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사유출 영향검토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오수 발생 영향검토 ○ 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여부 검토 ○ 점, 비점오염원 발생검토
	해양환경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5km 이내 해양 -해양수질·저질 3지점 -해양생태계 -조간대 3지점 -조하대 등 3지점 -2회조사	○ 계획시행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에 의한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검토
토지 환경	토지이용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주변 환경 및 지형 등 여건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여부 검토
	토양	○ 계획지구 -토양 6지점 -2회조사	○ 계획시행으로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영향예측
	지형·지질	○ 계획지구	○ 토지이용구상 및 입지현황을 고려하여 지형변화 및 생태축 변화여부 검토

〈표 2.2.3-6 계속〉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지구 및 여수시	○ 계획시행에 의한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폐기물 처리정책을 고려한 자원활용과 에너지 순환성 검토
	소음·진동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0.5km 이내 -소음·진동 7지점 -2회조사	○ 소음·진동 예측식을 이용하여 계획시행 시 소음·진동 영향을 예측하여 소음환경기준 등과 비교·평가
	위생· 공중보건	○ 계획지구 -현황조사 2지점 -2회조사	○ 계획시행으로 주변 시설에서 유발되는 오염원에 의한 영향을 예측하여 주거시설 입지에 대한 영향을 평가
	일조장해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 입지로 인한 일조장해 영향 검토
	위락·경관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km 이내	○ 계획내용을 토대로 경관변화 여부 및 경관변화 정도를 예측
사회· 경제 환경	인구·주거	○ 계획지구	○ 계획 수립에 따른 인구 및 주거 변화

2.2.4 환경현황 조사계획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사업시행 전·후 환경변화)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환경질 조사항목 : 대기질, 악취, 건강영향항목, 지표수질, 지하수질, 해양수질, 해양저질, 토양, 소음·진동
- 동·식물상 조사는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205호)」의 **【별표2】**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양식(제8조 관련)에 제시된 환경현황 조사방법을 충실히 준수하고 협의회 심의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실시하겠음
 -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탐문조사를 병행하고 탐문 조사 시 가급적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
 - 동·식물의 출현, 생육 등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 할 수 있는 시기에 가급적 현지조사 실시
 - 계획지구 및 인접 수계를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주변지역을 포함한 조사를 실시
 - 각 분류군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한 조사를 실시(전략환경영향평가지 2회, 환경영향평가지 2회)
- 이후 환경영향평가지 현장조사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재설정할 계획임

〈표 2.2.4-1〉 환경질 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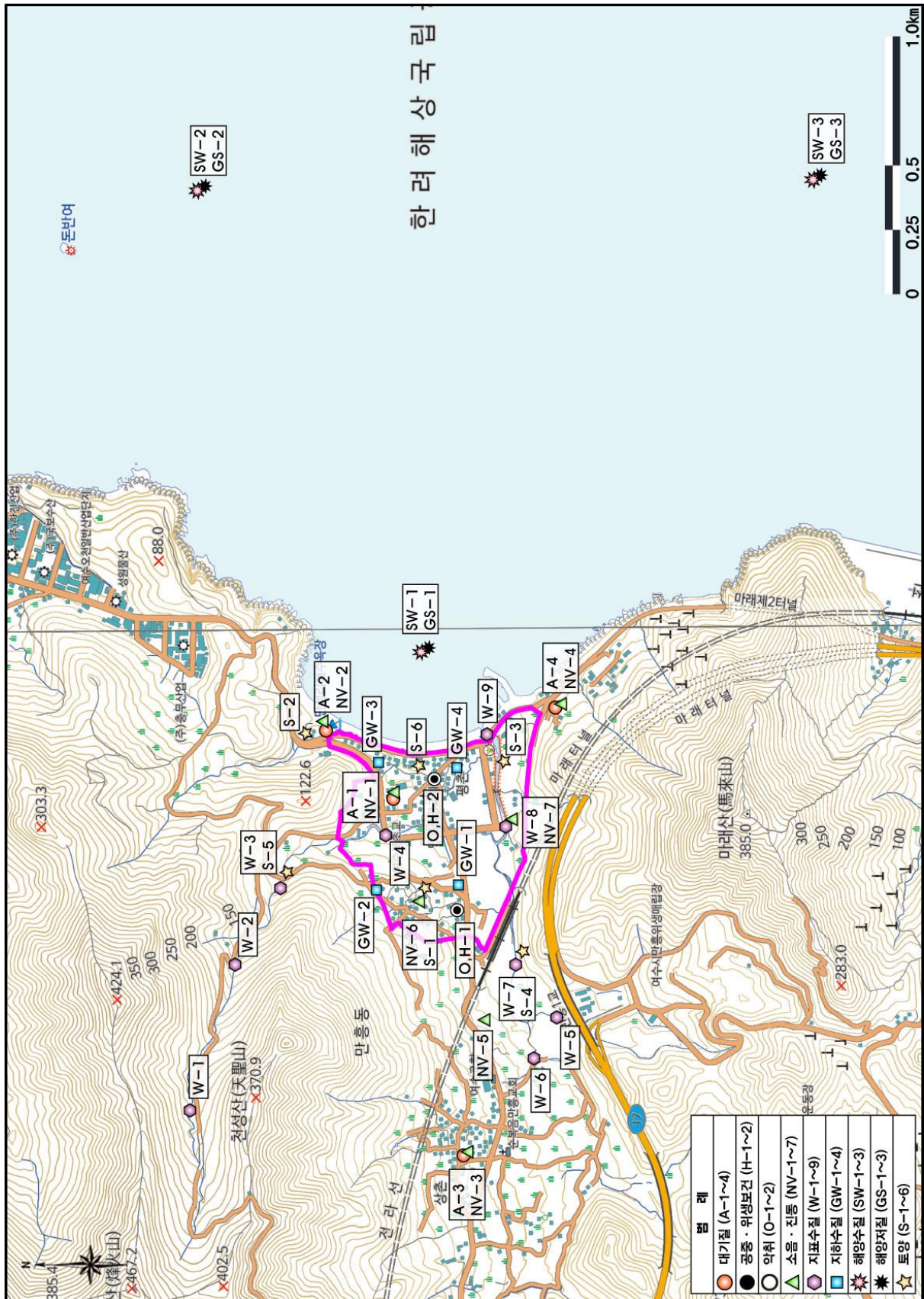
구 분		측정 항목	지점수	조사횟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기질		•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황산화물(SO ₂), 질소산화물(NO ₂), 일산화탄소(CO), 오존(O ₃), 납(Pb), 벤젠	4개소	2회	2회
악취		• 복합악취	2개소	2회	2회
건강영향항목		• 스틸렌,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벤젠,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수은, 암모니아, 황화수소, 포름알데히드, 니켈,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6가크롬	2개소	2회	2회
수질	지표수	• pH, DO, BOD, TOC, SS, T-P,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카드뮴(Cd), 비소(As), 시안(CN), 수은(Hg),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납(Pb), 6가 크롬(Cr6+),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유량	9개소	2회	2회

〈표 2.2.4-1 계속〉 환경질 현황조사

구 분		측정 항목	지점수	조사횟수	
				전략환경 영향평가	환경영향 평가
수질	지하수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납, 불소, 비소, 셀레늄, 수은, 시안, 크롬,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드뮴, 붕소, 페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1,1-디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4-다이옥산, 경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냄새, 맛, 동, 색도,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 수소이온 농도, 아연, 염소이온, 철, 망간, 탁도, 황산이온, 알루미늄	4개소	2회	2회
해양	수질	수은, 염분, pH, DO(표층, 저층), SPM, COD, TOC, 총대장균군, 용매추출유분, DIN, DIP, Cd, As, CN, Hg, Ni, Cr6+, Pb, Zn, Cu, 투명도, 클로로필-a	3개소	2회	2회
	저질	입도, TOC, AVS, IL, As, Cd, Cr, Cu, Hg, Ni, Pb, Zn	3개소	2회	2회
토양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인, PCB, CN, Phenol,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1,2-디클로로에탄	6개소	2회	2회
소음·진동		생활소음(주·야간), 생활진동(주·야간)	7개소	2회	2회

〈표 2.2.4-2〉 조사지점

항목	조사지점	조사위치	비고
대기질	A - 1	만홍북초등학교	
	A - 2	메리엘펜션앞	
	A - 3	상촌마을 내	
	A - 4	아리아펜션 리조트	
약취(O) 및 건강영향항목(H)	O, H - 1	공동주택 예정지	
	O, H - 2	단독주택 예정지	
지표수질	W - 1	전남 여수시 만홍동 87	절골천 상류
	W - 2	전남 여수시 만홍동 87	절골천 중류1
	W - 3	전남 여수시 만홍동 1473	절골천 중류2
	W - 4	전남 여수시 만홍동 1473	절골천 계획지구 내
	W - 5	전남 여수시 만홍동 1473-16	만홍천 상류
	W - 6	전남 여수시 만홍동 1473-16	만홍천 유입수계
	W - 7	전남 여수시 만홍동 1473-16	만홍천 수계 합류후
	W - 8	전남 여수시 만홍동 1473	만홍천(절골천 합류 하류)
	W - 9	전남 여수시 만홍동 1481	만홍천 말단부
지하수질	GW - 1	전남 여수시 만홍동 395-1	중촌마을1
	GW - 2	전남 여수시 만홍동 499	중촌마을2
	GW - 3	전남 여수시 만홍동 52	평촌마을1
	GW - 4	전남 여수시 만홍동 253-1	평촌마을2
해양수질(SW) 및 해양저질(SG)	SW, SG - 1	계획지구 북동측해역	
	SW, SG - 2	계획지구 동측해역	
	SW, SG - 3	계획지구 남동측해역	
토 양	S - 1	전남 여수시 만홍동 401-1	공동주택예정지(전)
	S - 2	전남 여수시 만홍동 64-3	상가시설예정지(전)
	S - 3	전남 여수시 만홍동 104-2	단독주택예정지(밭)
	S - 4	전남 여수시 만홍동 835-3	전
	S - 5	전남 여수시 만홍동 522	전
	S - 6	전남 여수시 만홍동 30	전
소 음 · 진 동	NV - 1	만홍북초등학교	
	NV - 2	메리엘펜션앞	
	NV - 3	상촌마을 내	
	NV - 4	아리아펜션 리조트	
	NV - 5	플로라호스텔펜션	
	NV - 6	공동주택예정지	
	NV - 7	단독주택예정지	



(그림 2.2.4-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지 환경질 현황조사 지점도

2.2.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계획임

1)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 1회 이상

〈표 2.2.5-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내용

구분	내 용
공고내용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 의견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실시사실 게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망 또는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국토교통부) 정보통신망
 - : 공고·공람 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 : 공고·공람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공람기간 : 20~40일 범위(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미산입)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관할 시·군·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시·구청, 주민센터 등에 주민열람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
 - 공람장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함께 소정양식의 ‘평가서초안 열람부’, ‘주민의견 제출서’를 비치할 것임

2)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람기간 내에 실시하며,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은 평가대상지역 관할 지자체와 협의·결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할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하나의 시·군·구에서 개최할 수 있음
-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

3)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공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나. 환경영향평가

- 향후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계획임

1)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것임
- 의견수렴 주체 : 사업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 1회 이상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내용

구분	내 용
공고내용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실시사실 게시
 - 사업지역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망
 - : 공고·공람 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 : 공고·공람 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공람기간 : 20~60일 범위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미산입)
 -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위치하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해당 시·구청, 주민센터 등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공람장소에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함께 소정양식의 ‘평가서초안 열람부’, ‘주민 의견 제출서’를 비치할 것임

2)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람기간 내에 실시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관할 지자체와 설명회 개최 장소 등에 관해 사전 협의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할 것임
-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

3)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공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해당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